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수신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귀하 (우473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16층 (범천동))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 통지(삼덕동1가 9-1)

1.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외 1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16층(우리자산신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①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철거) ② 위반건축물 내역 - 대지위치 : 대구 중구 삼덕동1가 9-1 - 무단증축[마당층, 판넬, 주차부스, 3.7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청	부서명	건축주택과	담당자	최 경 희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전화번호	053)661-2933
		전자우편 주소	soully39@korea.kr			팩스번호	053)661-2939
	제출기한		2024년 4월 1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u>**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주무관	최경희	건축행정팀장	한상문	건축주택과장	전결 2024. 3. 12. 최성문

협조자

시행 건축주택과-9922 (2024. 3. 12.) 접수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 / http://www.jung.daegu.kr

전화번호 053-661-2933 팩스번호 053-661-2939 / soully39@korea.kr / 비공개(6)

구민이 행복한 함께 하는 중구!

위반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대지위치	대구 중구 삼덕동1가 9-1
건 축 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외 1
조사내용	- 무단증축(마당층, 판넬, 주차부스, 3.75㎡)
위 치 도	
위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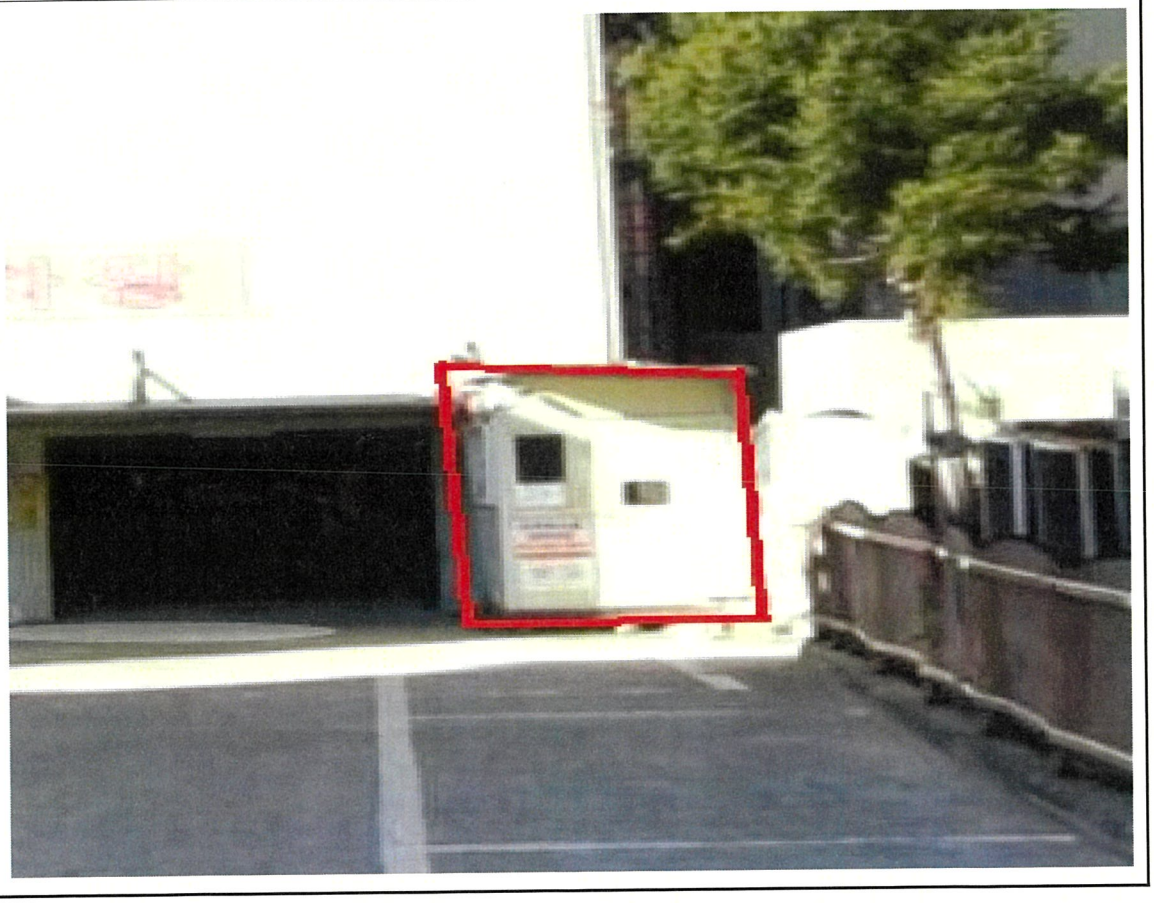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수신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외 1인 귀하 (우473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16층 (범천동))

부산3
20202691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철거) 독촉 통지(삼덕동1가 9-1)

1. 귀하 소유의 삼덕동1가 9-1필지 상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의 위반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어, 건축주택과-14895(2024. 4.15.)호로 자진 시정(철거)토록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2024년 6월 17일(월)**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소유주)	건축현황				위반내용
	성 명	구 조	층 수	용 도	면적(㎡)	
삼덕동1가 9-1	(주)우리자산신탁 외 1인	판넬	마당	사무실 (주차부스)	3.75	무단증축

2. 만약 위 지정기일 이내에 자진시정(철거)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오니 자진시정(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건축주택과(☎661-293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삼덕동1가 9-1). 끝.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주무관 최경희 건축행정팀장 한상문 건축주택과장 전결 2024. 5. 16. 최성문

협조자

시행 건축주택과-19349 (2024. 5. 17.) 접수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 / http://www.jung.daegu.kr

전화번호 053-661-2933 팩스번호 053-661-2939 / soully39@korea.kr / 비공개(6)

구민이 행복한 함께 하는 중구!

위반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대지위치	대구 중구 삼덕동1가 9-1
건 축 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외 1
조사내용	- 무단증축(마당층, 판넬, 주차부스, 3.75㎡)
위 치 도	
위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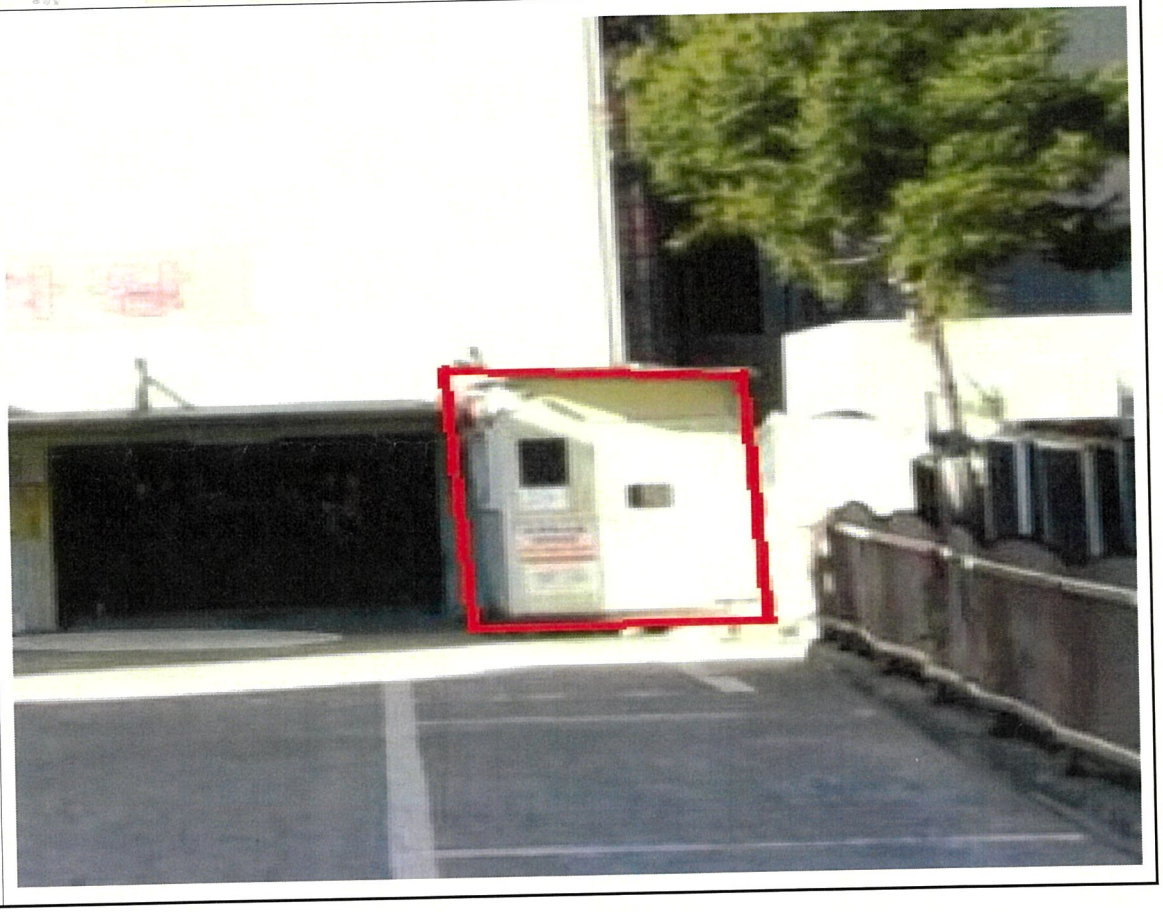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수신 (주)우리자산신탁 외 1인 귀하 (우473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16층(우리자산신탁) (범천동))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삼덕동1가 9-1)

1. 평소 우리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 소유(점유,관리)의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주택과-19349(2024. 5. 16.)호로 시정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처분 사전통지 합니다.

○ 위반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내역

대지위치	건축주 (소유주)	건축현황				위반사항	부과예정금액
	성 명	구 조	층수	용 도	면적(㎡)		
삼덕동1가 9-1	(주)우리자산신탁 외 1인	판넬	1	주차부스	3.75	무단증축	297,930원

3.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및 제27조(의견제출)규정에 따라 **2024. 7. 18.(목)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주택과(☎053-661-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삼덕동1가 9-1).
2. 의견제출서 1부. 끝.

접수 No. 2024. 06. 21 우리자산신탁(주) 부산지역본부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주무관 **최경희** 건축주택과장 전결 2024. 6. 18. **최성문**

협조자

시행 건축주택과-23998 (2024. 6. 19.) 접수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 / http://www.jung.daegu.kr

전화번호 053-661-2933 팩스번호 053-661-2939 / soully39@korea.kr / 비공개(6)

구민이 행복한 함께 하는 중구!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대 구 광 역 시 중 구 청

수신자 ㈜우리자산신탁 외 1인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2024년 7월 18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우리자산신탁 외 1인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16층 (우리자산신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① 이행강제금 부과 : 금이십구만칠천구백삼십원(₩297,930) · 산출근거: 851,250(시가표준액)×0.5(요율)×0.7(감경)=₩297,930 ② 위반건축물 내역 · 대지위치: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9-1 - 무단증축 [1층, 판넬, 주차부스, 3.7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대구광역시 중 구 청	부서명	건축주택과	담당자	최경희
		주소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전화번호	661-2933
		전자우편 주소	soully39@korea.kr			팩스번호	661-2939
	제출기한		2024 년 7월 1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대 구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주무관 건축행정팀장 건축주택과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4190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 http://jung.daegu.kr
전화번호(053)661-2933 팩스번호(053)661-2939 / soully39@korea.kr / 비공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